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10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5. 3.

고 명 욱 의원

# 제안 설명서

제안자: 고명욱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 확대와 주거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를 확대하여 주민 접근성 제고 및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폐의약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약물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는 불용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확대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 확대에 관한 사항을,
-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명욱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5014
----------	----------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 고명욱, 박정환, 남현주,  
강한곤, 정순옥, 황국주,  
도하석, 서보영

## 1. 제안이유

- 노인 인구 확대와 주거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를 확대하여 주민 접근성 제고 및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폐의약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약물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불용의약품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나.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다.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내”를 “등”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약국 또는 구 보건소”를 “약국, 구 보건소, 동 행정복지 센터, 복지관, 공동주택 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기관 등에서는 관리자가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수거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거·운반·처리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운반·처리”를 “수거·운반·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약국에서 수집한 폐의약품을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등에서 소각처리하며”를 “수거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은 공공처리시설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하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성  
실히 하며,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홍보하여 폐의약품 수  
집의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약국에서 수집한  
폐의약품을 수시로 운반하여 처  
리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운반·처리할 수 있  
다.

⑤ 구청장은 약국에서 수집한  
폐의약품을 대구광역시환경시  
설공단 등에서 소각처리하며 회  
수·처리 대장을 작성·관리한  
다.

등에서는 관리자가 수집된 폐의  
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수거  
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  
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  
로 수시로 수거·운반·처리한  
다. --- 수거·운반·처리----  
--.

⑤ ----- 수거장소에서 수집  
된 폐의약품은 공공처리시설 등  
을 통하여 소각 처리하며 ----  
-----  
--.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④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 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